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學校運營委員會에 대한 學父母와 教師의
知覺에 관한 研究

A Consideration for Perception Both of Parents and Teachers
About School Steering Committee

1 9 9 7 年 8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張 吉 子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璟 培

學 校 運 營 委 員 會 에 대 한 學 父 母 와 教 師 의
知 覺 에 관 한 研 究

A Consideration for Perception Both of Parents and Teachers
About School Steering Committee

위 論 文 을 教 育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1 9 9 7 年 8 月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張 吉 子

張吉子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7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內容	3
4. 研究의 制限點	4
II.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考察	5
1. 地方教育自治와 學校 運營	5
2. 學校 經營 自律化와 學父母 參與	16
3. 우리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27
4. 外國의 學校運營委員會 運營事例	38
5. 先行 研究의 考察	53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57
1. 研究의 對象	57
2. 研究의 道具 및 內容	59
3. 資料의 處理	60

IV. 結果分析과 論議	61
V. 要約, 結論 및 提言	78
1. 要約	78
2. 結論	81
3. 提言	82
參考文獻	83
<附錄>	86
ABSTRACT	90

表 目 次

<표 1> 과거의 학교운영 모습과 새로운 학교운영 모습 비교	32
<표 2> 설문지 배부와 유효 응답율	57
<표 3> 교사의 변인별 분포	58
<표 4> 학부모의 변인별 분포	59
<표 5> 교사, 학부모 설문지의 문항별 구성 및 내용	60
<표 6> 조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61
<표 7> 조직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63
<표 8> 조직에 관한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	64
<표 9> 기능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65
<표 10> 기능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66
<표 11> 기능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 지각 차이	68
<표 12> 운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69
<표 13> 운영에 관한 학교 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70
<표 14> 운영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 지각 차이	71
<표 15> 교사의 학교 조직,기능,운영에 따른 지각	72
<표 16> 학부모의 조직, 기능, 운영에 따른 지각	73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정부의 교육 개혁 위원회는 1995. 5. 31 교육 개혁안을 발표 하였다. 교육부는 교육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95년 9월 부터 이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96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98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 하든지간에 그 구성 자체가 갖는 큰 의의는 학교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의 주체자인 교원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서 학교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¹⁾

어떤 제도이든 간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그 제도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수한 교육 제도의 개혁을 단행해 왔지만 우리 교육의 실제 모습은 별로 변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운영 위원회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학교 운영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학생과 교사들의 삶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져야만 한다.

즉, 지시 명령에 길들여져 있는 학교에서 학교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

1) 유현숙,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역할, 새교육, (서울 : 대한 교육 연합회, 1995. 11.) p.155.

하는 자주적인 학교로, 소수가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학교에서 다수가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학교로, 공급자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학교 교육으로, 획일적 학교 운영에서 융통성 있는 학교 운영으로 폐쇄적 학교 운영에서 열린 학교 운영으로, 비전문적, 전근대적 학교 운영에서 전문적·과학적인 학교 운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었던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느끼는 학교로 전환하는데는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이 그 몫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납세자인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는 미흡하며 또한 교사들도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는 교무회의, 학년 협의회, 기획 위원회 등 형식적 참여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련 집단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지각 정도와 그 차이, 학교 급별 학부모 차이 학교급별 교사 차이를 밝혀 봄으로써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학교 구성원간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려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研究의 目的

이상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지각의 차이, 학교

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넷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중 중요순위는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3. 研究의 內容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를 시도한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힌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를 밝힌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힌다.

넷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순위의 차이를 밝힌다.

4. 研究의 制限點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에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중등학교로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교원 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실제 운영에 대한 지각 차이 분석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부모의 응답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초등학교 학부모의 연령층이 비슷하므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 분석은 제외 하였다.

Ⅱ.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 考察

1. 地方教育自治와 學校 運營

우리 憲法은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립을 최고 이념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民主的인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兩者의 同一性과 造化를 追求하는 곳에 教育의 方向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改革의 방법은 國家的 指導와 地方的 自律, 全國的 統合과 地方的 多樣性을 어떻게 造化할 것인가가 큰 關鍵이다. 지금까지 우리 教育은 兩者의 造化를 이루지 못하고 국가의 一方的 指導와 統制 및 劃一化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우리는 이제 지방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教育도 自律性과 多樣性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미래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 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

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²⁾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 교육자치이다.

지금까지 학교경영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외된채 모든 의사결정이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상급 교육청이 사실상 독점해 온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학교로 돌려줬다는 측면에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구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작용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지방교육자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육정책상의 교육자치제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5, pp. 4~5.

3) 서정화 외, 교육행정제도 개선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0), pp. 74~75.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듯이⁴⁾ 교육자치 역시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구성된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의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

4) 손재식, 현대지방 행정론(서울 : 박영사, 1983), pp.27~28.

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⁵⁾

한편,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정책에만 국한된 협의의 개념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가 하는 점이 논의될 수 있다.⁶⁾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⁷⁾

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 래서도 안된다. 항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권화가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결국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과 자주성 보장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조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⁸⁾

5)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 : 양서원, 1996.), p.27.

6)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3(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6. 12), p.7.

7)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연구회 제3권 제3호(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12), p.29.

8) 조성일·안세근, 전게서, p.28.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 자율성 보장은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제도와 운영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교육자치제의 개념 내지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원리, 민주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⁹⁾를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들고 있다.¹⁰⁾

또한 김영식·최희선은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¹¹⁾

이상에서 논의 제시한 교육자치제의 제원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법 총칙 제1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9)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서울과학사, 1991), pp. 84~86.

10) 김종철·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p. 209~210.

11)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서울 : 성원사, 1988), pp. 326~330.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교육 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발휘되어 운영될 때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¹²⁾

(1) 교육의 자주성의 원리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의미한다.

첫째,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자주성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활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결정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치행정과는 구별됨을 의미한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예속되어 있는 한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5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

12) 조성일,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서울 : 재동문화사, 1995), pp. 266~270 ;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교육정책과정 분석연구’(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1993), pp.41-45.

건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교육위원의 자격을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¹³⁾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기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교육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법 제14조 제1항의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실천사항으로 동법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¹⁴⁾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정책의 집행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간의 다

13)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436.

14) 조성일, 전제서.

양성을 최대한으로 허용해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기관으로의 권한 배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교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더불어 학교운영에까지 참여를 해보자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2) 교육의 전문성 원리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원리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결정 및 최종 의사결정을 하면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따라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이 집행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요원의 전문성은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조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확립하고 이를 지원·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필연적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기간 동안의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더 높은 교육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교육행정요원들에 의해 교육행정 활동이 효율적·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만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15)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85. 12, p.21.

16) 조성일, 전거서, p.32.

교육행정요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자치제는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다. 전문성은 본래 그 과업의 독자성과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고도의 지성, 장기간의 직전교육과 지속적인 훈련, 엄격한 자격요건의 적용,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 애타적 동기에서 출발한 봉사성, 고도의 직업윤리, 전문적 단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지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¹⁷⁾

교육행정 활동의 전문성 원리는 헌법과 교육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전문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74조는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될 성격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편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규정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32조 제2항에서 “교육위원은 그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교육의 특수성 원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및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

17) 조병효,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서울 : 교육과학사, 1988), p.58.

역 실정에 부합되는 교육행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제이다.

지방교육자치가 그 원리로 갖고 있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주민참여의 원리와 자주적 재정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¹⁸⁾

첫째, 주민참여의 원리로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주민참여를 요구하게 되며, 국가적 통치권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주민참여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주민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투표권 해상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포드(Robert R. Alford)가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라고 정의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에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이 과정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¹⁹⁾

주민참여는 주민통제로 연결된다. 지방교육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대표를 통한 교육정책의 발안·심의·결정, 그리고 집행에 대한 통제는 교육에 있어서 관료적 통제를 제한하게 된다. 결국 주민들이 교육정책과 방침으로 정해 준 범위 안에서 교육전문가들은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정치와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치단체는 주민이 직접선거를 한다든가 또는 공선된 기관에 의하여 선임

18) 조병호, 전게서, p.59.

19) Robert 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p.21.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고 민주시민의 양성은 민주교육에 의해서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교육문제이다. 따라서 단체장 후보들은 그들의 선거공약에 해결해야만 하는 지역의 교육문제를 당연히 의제화시킬 것이고 당선 후 이러한 교육문제를 교육위원과 교육감 나아가서는 단위학교와 협조 내지는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범위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법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지방교육행정 및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자주적 재정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행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면서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²¹⁾

최근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부동산 관련 교육세 인상과, 소득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주민세분 교육세의 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²²⁾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등 국세분 교육세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20) 김보현 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 1982), p.266.

21) 김보현 외, 「상계서」 p.267.

22)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자료, 1994), pp.35-36.

사용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에 통합하면서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총액의 일정률을 지방교육특별회계에 전입하든가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일정률을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한다는 것이다. 윤정일은 지방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조세체계를 조정·개편하며,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세로 전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에 대한 책임과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즉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방교육의 주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특정세출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일정률을 교육비로 전출토록 한다.²⁴⁾ 또한 지방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NP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學校 經營 自律化와 學父母 參與

1) 학교 경영 자율화의 필요성

학교경영에 관하여 한 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경영 자율성을

23) 윤정일, 교육재정학(서울 : 세영사, 1993), pp.37-38.

24) 상계서, p.163.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교경영 자율성을 가치로운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현실의 학교경영에서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환언하면, 학교경영의 자율성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일 경우도 있고, 사실판단일 경우도 있다.²⁵⁾

교육개혁 심의회는 교육행정 자율화의 한 방안으로 학교단위의 책임경영 강화를 들고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⁶⁾

첫째,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감독청)의 지시와 통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둘째, 학교운영은 교육의 전문성과 운영주체의 높은 자질에 비추어 고도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 방식은 그 자체가 교육의 생생한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도 자율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노종회는 교육에 있어서 자율화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⁷⁾

첫째,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획일적 통제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은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 판단과 결정은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

셋째, 학교는 학급행정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적 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성을 갖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조직의 기능과 그 특수성 등에 초점을 두어 학교경영 자율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25) 문락진,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p.132.

26)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종합구상 (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7), p.109.

27) 노종회, 교육행정(서울 : 문음사, 1992), pp.490-491.

첫째, 학교의 교육목표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행동특성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학교경영은 당연히 민주화·자율화되어야 한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① 건강한 인간 ② 자주적 인간, ③ 창조적 인간, 그리고 ④ 도덕적 인간을 두었다. 이러한 인간상 내지 행동특성은 학교교육목표에서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타율적인 학교풍토 속에서는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학교사회의 구성원인 교사는 고도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업수행상의 융통성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의사에게 환자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모든 작업과정에서 그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해야 하듯이 학습지도과정에서도 교사에게 그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교육을 독자적·창의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가능한 한 권한을 위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조직은 이완결합체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의 자율화가 요청된다. 이완결합이란 구조와 활동사이의 결합의 이완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교조직에서 교장의 직무와 상담교사의 직무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학급교사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독립된 교실에서 다른 교사들과 고립된 채 각자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므로, 교장은 교사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장은 전문가인 교사들을 믿고 그들이 자율적·창의적으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해 주고 동기를 적절히 유발시켜 주어야 한다.

28) 노종희, 전게서, P.491.

넷째, 교육의 자주성 존중이라는 측면인데,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 존중은 교육체제 그 전반에 걸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제4항과 교육법 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조직과 교육내용이 교육장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등 교육의 외적세력의 부당한 통제나 간섭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교사의 역할

어린이의 발달권 내지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가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서독의 H. Heckel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기관인 학교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 발달하고 개성 있는 인간이 항상 새롭고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서 규칙이나 명령 위주의 지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29)고 하였다. 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전문직 사람으로서 교사의 자유와 자율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끌어내서 이를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은 인간의 발달 법칙에 정통하고 이 법칙에 따라서 교육의 제요소가 합리적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 때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교육 방법은 교재 또는 교과서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사와 어린이의 인간 관계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직화될 때 그 과학성과 유효성과 보장된다.30)

교사는 면허된 교육의 전문가이다. 그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과

29) 兼子仁 외, 教育行政と 教育法の理論(東京:東京大學出版, 1979), p.199.

30) 정일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망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5.

방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이 공인된 자격이다. 승인된 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 당국의 지원 아래 교재의 선정과 채택, 교과서의 선택, 교육 방법을 채용하는 자유가 그에게 부여³¹⁾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학생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 또는 집단의 교육 연구와 실천과 발표, 비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실천이나 연구의 과정에는 어떠한 자의적·권력적 개입·간섭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의 실천이나 연구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어린이의 자유로운 능력 신장은 저해되며, 결국 어린이의 발달권, 학습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의 교육 연구 실천을 위한 개인적·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교사 집단, 연구가 집단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³²⁾

3)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지역사회 학부모, 주민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나 주민들이 참여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첫째, 학습권 보장에 있다. 우리는 현재 지방교육자치와 더불어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시민 사회에서 주민은 주인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 즉 배

31) '교원의 지위에 관하 報告' 教育小學法(동경:學陽서방 1986), pp. 748-756.

32) 정일섭, 상계서, p.5.

33) 조성일·안세근, 지방 교육자치 제도론(양서원, 1996), pp.321-326.

우고 가르치는 활동에 관한 가장 근본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각 학습자에게 귀속된다. 가르치는자, 즉 교육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학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과 그에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를 일종의 자연권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³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공교육 체제하에서 교육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국민은 취학 의무와 수업료 부담의무만 강요받았을 뿐, 교육사무에 관한 정책 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지방 자치의 시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육의 주권자로서 주권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더불어 학부모와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개별 학교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교육을 만드는데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생활 양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교육활동이 경직된 규제에 묶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 참여는 그동안 중앙집권적·획일적인 교육 행정의 타성과 관존 민비의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교육관료들의 일방적 의사 결정과 독선적·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공교육 체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 참여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교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우게 된다.

중앙 집권적·획일적인 교육이 교육활동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좋을지 모

34) 김신일 외, 시민의 교육학(서울 : 한길사, 1995), pp.32-33.

르지만 능력과 개성이 다른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³⁵⁾

셋째,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는 지방 교육 자치의 시작이다. 지방 교육 자치의 실시는 학교의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지역적인 특수성의 실현과 더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³⁶⁾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지역의 발전은 교육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부모, 주민, 교사는 당해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한 교실에서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한 학년에 10여개 이상의 과대 규모 학급, 그리고 이부제 수업 등이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이 21세기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은 한낱 희망과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근대적 교육 시설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요구된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학교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그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교육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학교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는 그들이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 자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35) 김신일 외, 전게서, p.33.

36) 조성일·안세근, 전게서, p.326.

4) 학교 교육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기까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위원회(1945-1952)³⁷⁾

8.15해방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취학 인구에 비해 수용할 교육 시설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교 위원회의 성격을 띤 각종 학부모 단체가 발족되었다. 1947년 당시 교육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5.5%에 불과하였으며 초등학교 비 중 공비 부담이 30% 미만이었고 학교 경비의 7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전쟁 재해 학생 위원회(1946), 사범학교 후원회 연합회(1948), 서울시 중등학교 후원회 연합회(1949), 국민학교 후원회 연합회(1953) 등의 학부모회가 이때 발족하였는데 이 후원회들은 학교의 물질적 후원에 중점을 두고 교실의 확보와 교원의 생계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후원회들은 부족한 교육시설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학교 행정 간섭이라는 문제와 학교간의 격차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나. 사친회(1953-1962)³⁸⁾

사친회는 학교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환경을 개선 하는 등 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37) 이동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6), p.13.

38) 조창신, 학교 육성회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6.

그 사업으로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계획, 교육 연구, 설비, 보건, 문화, 교양, 지도 등 제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교외 지도는 학생들의 교외 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재정의 지원 뿐 아니라 교사의 후생복지와 교육활동에도 협조하는 등 학교 교육 본질에 접근한 활동이었고 자주적 단체였다.

다. 학교 기성회(1963-1969)³⁹⁾

기성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을 지원 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업으로는 내부 시설물의 보완과 증축, 부족 교실의 신축 교사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학교 운영이 보조 사업 등이 있다.

학교 기성회는 오로지 교실의 건축, 확충을 위한 단체였으나 5.16 이후 교원에 대한 연구비까지도 지급하게 되었다.⁴⁰⁾

라. 육성회(1970-1996)⁴¹⁾

1969년말 문교부는 “잡부금 양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1970년 2월 “학교 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성회를 해체시키고 육성회를 발족시켰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의 두번째 항목에는 “국가 재정 형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협찬, 부담하는 방안을 숭복한다면 이를 받아 들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육성회 운영의 대강은 첫째, 회비 기준액은 시·도 교육감이 학부모 부담능력, 당해지역 생계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되 학부모의 소득 계층에

39) 조창신, 상계논문, P.17.

40) 어대수, 학교 육성회 운영에 관한 연구(부산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41) 이동기, 전개 논문, p.15.

차등 책정한다. 둘째, 교사는 회비 징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 육성회 예산은 교사 생계 보조에 60%, 학교 운영비에 36%, 학생복지비에 4%를 사용한다 등이다.

그러나 육성회는 출범한지 불과 1개월만에 모순 많은 운영 지침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효과에 퇴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조선 일보, 1970. 4. 25)이후 육성회는 여러 차례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왔는데 육성회의 발족후 금지되거나 잡부금의 부활, 육성회 찬조금의 과다 및 강제 징수, 육성회 찬조금의 부당한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의해 육성회 찬조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육성회비는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로 전환되어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만 조직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아직도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 1988년부터는 지방 자치제와 교육 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한 자율성 배양을 위해 종래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던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위원회에 일임하였다.

마. 어머니회(1983.6-)⁴²⁾

어머니회는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에서 문교부에서 협조를 요청하여 1983년 6월 문교부 공문으로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조직 운영을 권장한 결과 설립된 것으로 이듬해 말에 전국 초·중·고교의 88%인 9,250개에 조직, 운영되었다가 제5공화국의 마감과 함께 어머니회로 명칭 변경되어 현재 육성회와 함께 학부모회의 양대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육성회비가 물

42) 이동기, 전제논문, p.16.

질적 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면 어머니회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육성회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5.31 교육개혁에 따라 육성회비의 명칭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바뀌었으며 육성회와 어머니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바. 학부모 명예 교사회⁴³⁾

가정통신문을 통해 특기가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추천받아, 담임교사와의 면담, 학부모 협의회 등을 거쳐 특기 지도가 가능한 학부모를 발굴하여 명예 교사로 위촉하고, 클럽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시, 명예 교사 협의회 및 연수회를 마친 후 클럽 활동부서를 맡겨 지도케 한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클럽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 운영 함으로써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클럽 활동 부서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생동감이 넘치고 내실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 교사인 학부모에겐 보람을 갖게 하고,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사. 녹색 어머니회⁴⁴⁾

이 단체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게 하고 교통 규칙 위반을 저지르는 학생들의 습성을 고쳐서, 사회의 모든 규칙과 법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이 스스로 녹색어머니회라고 칭하며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43) 이영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교육부, 교육월보, 1995. 3), p.54.

44) 서울 중평 초교 「녹색 어머니회 운영 계획서」 pp.1-2.

단체이다.

교통지도는 학교주변의 통학로와 횡단보도에서 매일 등하교시 지도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 학교 급식 위원회⁴⁵⁾

이회는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회원은 학교애 자녀를 둔 학생의 보호자이며 특별회원은 학교 교육 활동 및 학교 발전에 뜻을 둔 지역 인사이다. 이회의 구성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점심급식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3. 우리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⁴⁶⁾

1)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개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

45) 서울 상경 초교, 학교급식후원회 규약, pp.2-3.

4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교육부 지방 교육 지원과, 을지문화사, 1996.7. pp.9-12.

련하였으며, 시·도 조례는 시행령에는 위임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일반정족수보다 엄격한 특별정족수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3) 5.31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⁴⁷⁾

(1) 5.31 교육개혁안

4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전게서. pp.10-11.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세계화라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권에 서기 위해 세계 각국은 서로 앞을 다투어 새로운 교육혁명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새로운 정보·기술·문화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5.31교육개혁안은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21세기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그동안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으로 생각했고, 교사들도 학교운영은 학교장이나 교감 등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했으며, 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을 활용해 온 지역사회 역시 학교운영이 교원들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은 지역사회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안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며, 교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3)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확립

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의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운영과 교육에 대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단위학교가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관리, 인사, 재정,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체제를 의미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담당자들이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구체적 확립 방안

가. 학교경영책임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중앙집권적 체제에 익숙한 학교경영체제의 수동성, 타율성을 벗어나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학교경영자의 의견이 보다 존중되고,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학교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나. 학교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참여도를 높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도 제고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영역은 기능 및 특기 지도, 학생 생활 지도, 학교경영 자문, 학교재정 지원, 교원연수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 학습부진아 보충지도 지원, 기타 교통안전 요원·급식 요원·도서실 운영 지원 등 다양하다. 또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

급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⑥ 교사의 참여도 제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교사의 참여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학교조직을 정비한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학교예산 운영계획 수립에의 교사의 참여 범위 확대,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참여 제고와 자기 연수기회 부여 등을 통해 교사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다.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관건은 학교경영책임자의 자율성·전문성 제고와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인사의 참여율 제고를 통해 학교경영의 합리성·효율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여집단 모두의 의견이 조정·통합되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타율성을 자율성으로,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비전문성을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도 학교 내에 각종 위원회 및 공식·비공식 기구 등을 통한 의견수렴 통로가 있었으나 학교경영의 발전에 그 고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③ 새로운 학교운영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이해집단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에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을 민주화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따른 학교장의 합리적인 권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

<표 1> 과거의 학교운영 모습과 새로운 학교운영 모습 비교

과거의 학교 운영 모습	새로운 학교 운영 모습
○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 교육수혜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운영 ○ 소수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운영 ○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학교운영 ○ 획일적이고 전문성이 미흡한 학교운영	○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운영 ○ 다수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의 사결정을 하는 학교운영 ○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 전문적이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⁴⁸⁾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새로운 차원의 열린학교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교운영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교육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참여의 학교운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의

48) 유현숙,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의 기쁨길, 교육개발 통권 97호, 한국교육개발원, 1995. pp.36-37.

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교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학교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⁴⁹⁾

(1) 실시 범위, 실시 시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의 모든 공립 학교에 설치하도록 한다.

사립 학교에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95년 2학기부터 지역별로 시범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98년도 1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한다.

(2) 위원 정수, 구성 및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집단은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교육행정기관, 교육 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로 한다. 그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사30-40%, 지역사회 인사 10-30%로 되어 있고 그 수는 7~15명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은 학부모 위원은 정당인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 교사 위원은 그 학교에 1년 이상 재직한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49)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1996) pp.331-332.

(3) 위원 선출 방법 및 과정

위원 선출 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에 의해 교사 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 사회 인사는 학교장, 학부모, 교사 위원들이 협의하며 선출한다. 선출 과정은 직접 또는 간접선거 어느 방식을 택하든 후보 등록, 안내 등 민주적 대의 절차에 충실해야 한다.

(4) 위원의 선출 시기, 임기

위원 선출 시기는 학부모, 교사 위원은 회기 개시 전 10일, 기타 위원은 개시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다.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이고 2차에 한해 연임(총3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육행정을 제외하고는 2학교 이상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 위원의 자격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일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 교사의 전보, 학생의 퇴학 등의 사유나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6)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⁵⁰⁾

(1)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
- . 학교의 예산과 결산
- . 선택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 선정
- . 방과후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및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 . 학교 급식 내용, 급식품의 선정, 조달 방법, 급식비 결정 등 급식 관련 사항
-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과 청원 심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교장에게 뿐 아니라 관할청에도 나뉘대로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관할청은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으면 1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그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일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청원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학교나 관할청에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1인 이상의 위원 소개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한다.

50) 전게서, pp.329-331.

(3) 학교 발전 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육성회는 폐지하고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꾼다. 그 금액, 사용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항은 관할청의 지도를 받는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이외의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 방법, 사용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학교장과 의논한다.

· 위의 지원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고 일반 회계와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4) 교사 및 학교장 초빙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초빙을 위한 ‘교장추천위원회’ 및 교사 초빙을 위한 ‘교사 추천 위원회’구성과 관련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 즉, 어떤 학교가 ‘학교장 초빙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며 초빙된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는 교사를 추천하기 위한 ‘교사 추천 위원회’구성 등 ‘교사 초빙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 개혁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학교에서 요청한 초빙 조건에 따라 학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 구성하는 ‘학교장 추천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응모한 교장 후보 중에서 학교 경영자로서의 지도력과 전문성, 학교 경영 구상 등을 평가하여 최적임자

2명을 선정한 후 임명권자에 임용 제청한다.

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⁵¹⁾

(1) 회기 및 소집

- . 회기 :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 소집 : 학교장 요청 또는 재적 위원 $\frac{1}{3}$ 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 위원에게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보 : 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
-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
- . 회의 일수는 총 30일을 넘지 않도록 함.

(2) 안건 발의 및 처리

- .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frac{1}{3}$ 이상의 연서로 발의
- .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frac{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

(3) 회의 운영

- . 학교장의 발의 안건 처리시는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및 질의 응답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 청취, 학생 관련 사항은 학생 대표 위원 청취, 관할청이나 일반 행정 기관의 의견 청취 등도 가능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교 운영 위원회의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1995.10), pp.7-9.

- 위원장은 회의 기록 등을 위해 서기 1명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 임명
- 재무관리, 시설관리, 사회교육, 기금 모금 및 관리 등의 과제에 대한 소위원회를 두어 안전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봉사 활동 및 학생지도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음 (현행 어머니회, 사친회 등을 흡수권장)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열람 가능토록 함.
- 학기말에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부모 및 관청에 배포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 때 보고
-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

4. 外國의 學校 運營委員會 運營 事例⁵²⁾

세계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개혁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가 그것이다.

그 중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우리 나라 교육개혁 중 초·중등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로 도입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52)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교육부 지방 교육지원, 1996. 7), p.13.

그러므로 각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⁵³⁾

(1) 개요

미국은 자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주마다 그리고 같은 주안에서도 교육구(School District)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형은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대동소이하므로 워싱턴 주의 시애틀지역 3개도시(Seattle 시, Shoreline시, Mukilteo시)교육구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구에 따라 1990년~1993년 사이에 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다수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을 갖고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결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권고나 제안을 하는 의결기구로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 학교장, 교사 및 교직원,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교육방침을 통해 바람직한 학습 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53) 송인호(주 시애틀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장),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교육부 해외 교육정보, 1996. 2. 1.), pp.13-15.

- 학교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지역사회 및 교육청의 지원을 구한다.
- 관계 법률, 규정 및 계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교육과 정의 결정, 학습자료의 선정, 특별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향상에 적합한 문제들에 관한 방안을 제안한다.
-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 서무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학교 후원 기업대표, 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Seattle시 교육구의 경우 위원정수의 14명이며 Mukilteo시 교육구는 15명, Shoreline시 교육구는 12-16명이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학부모위원

학년말인 6월에 교지나 뉴스레터 또는 학교게시판에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며 9월 새학기에 선출된다. 본인의 지원이나 다른 학부모가 추천한 후보자 중 9월 총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거나 또는 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출된다.

(b) 교직원위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 교직원위원 선거는 매년 첫

학기의 첫달(9월)에 실시된다. 6월부터 후보자 지명이 시작되는데 본인의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지명에 의한다. 지원서는 학교 사무실에 비치되며 선임위원은 지명자 중 9월에 실시되는 전체교사, 전체직원의 총선거에서 선출된다.

(c) 지역인사위원

관심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의로 2명을 선정하고,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한다.

(d) 학생위원

학부모위원이나 교직원위원 선출과정과 같다.

③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학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연4회 이상 불참하는 위원은 의장이 연락을 취해 임무수행 의사를 타진하여 처리하며 6회 이상의 불참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④ 임원 선정 및 임원의 임무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간사 1인을 선정한다. 위원 중 누구라도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에 한한다. 의장은 사전에 의제를 준비하여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며,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하고 의장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위원회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참여가 개방된다.

(4)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장 채용

학부모 대표자와 교직원이 면접팀의 일원이 된다. 면접팀의 인원구성은 교육청 인사부서가 담당한다. 운영위원 중에서 반드시 1명 이상이 면접팀에 포함된다. 면접팀에 포함된 교사 대표나 행정가 또는 그밖의 어떤 사람이라도 면접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행정가의 권한으로 그들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다. 학교장 선정의 최종 승인은 교육위원회(교육청)가 한다.

② 교사,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의 채용

교사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사 지원자 명단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선정하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은 교육청 단위의 팀에서 선정한 지원자 명단 중에서 운영위원 내의 선정소위원회와 함께 학교장이 선정하며 최종 승인을 교육위원회가 한다.

③ 학교 예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학교에 배정된 예산의 지출내

역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④ 학교목표설정과 학생생활지도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계획을 포함한 제반 학교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근태규정(attendance policy)의 틀안에서 학생생활지도 방침에 대한 결정을 한다. 또한 관계자들이 모여 학생활동을 계획한다.

2)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⁵⁴⁾

(1) 개요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다. 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육과정, 성교육, 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연례보고서를 송부하는 의무도 갖게 되었다.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방면으로 강화·확대되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의무를 교육청(LEA: Local Educational Authority)과 함께 위원회에도 부여하였다. 1994년 1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체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은 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즉 법인에 귀속되게 되었다.

54) 강사민(주 영국 한국교육원장),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교육부 해외교육정보, 1996. 3. 1.), pp.16-19.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장·교사위원, 교육청임명위원, 선출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수는 학교규모(학생수)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00명 이상의 학생수를 가진 학교의 경우 총위원수는 19명이며 학부모위원이 5명, 교장, 교사위원이 2명, 교육청임명위원 5명, 선출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 진행,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① 학부모위원

임기는 4년이고, 자격은 학부모이어야 한다. 학부모들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임기 중 그 학교의 학부모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위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으나 원한다면 사임할 수 있다.

자격만 해당된다면(계속 학부모일 경우) 재선출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가 학부모 또는 그 지역의 5세-16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

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며 재선출이 가능하다. 교사위원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직도 상실된다.

③ 교육청임명위원

임기는 4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

④ 선출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교육청임명위원이 모여 선출된 위원들이다. 이 위원들은 2/3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이 위원들 중에는 그 지역의 산업체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재임명될 수 있고 선출해 준 위원들에 해임되지는 않는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교육과정에 대해 교장, 교사, 위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교육과정에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되고, 그 운영이 잘 되도록 교장을 도와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은 국가교육과정과 종교교육이고, 중학교의 경우 성교육이 포함된다.

② 예산관리

학교의 재정은 주로 교육청에 의해 충당된다. 그외 기부금, 학교건물임대료 등이 학교의 수입원이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산집행에는 두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교육청이 부과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직 학교교육의 목적으로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교직원 임명, 관리, 해고

학교교직원의 고용주는 교육청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장과 함께 교직

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교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위원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위원회는 1-2명의 위원에게 교직원 채용의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직원의 수를 결정하고, 직원이 사직할 경우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없앨 것인가도 결정한다.

(a) 교장 임명

교장을 채용하려면 위원회는 신문에 광고를 내야하며 채용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능은 소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다. 교육국장이나 교육청의 대표는 채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준다. 채용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회는 다시 광고를 내야 한다. 교육청은 위원회가 추천할 후보자가 건강상 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b) 교감 임명

위원회는 교감을 학교에 둘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교감 임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때 교장과 교육국장은 그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청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교감으로 임명해야 한다.

(c) 교사 임명

위원회는 교사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 여부를 결정한다. 충원한다면 충원할 교사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임명 절차는 교장·교감의 경우와 동일하다. 교육청은 타학교의 교사를 전보발령할 수는 없으나 지원자를 추천할 수는 있다. 교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에 채용광고를 내야 한다.

④ 정보 제공

위원회는 일정한 정보를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a) 학교 안내책자 발간

위원회는 매년 학부모와 예비학부모를 위하여 학교안내책자를 발간하여야 한다. 안내책자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교장 이름, 위원회 의장의 이름
- 학교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다음 학년도의 학기기간과 방학기간
- 교훈, 학교의 입학정책
- 민원처리에 대한 학교의 방침
- 교육과정 내용, 운영방법 평가
- 특수아 교육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 개요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위원회의 정책
- 장학검사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 등

(b) 연례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송부할 연례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아야 한다.

- 연례 학부모 모임의 일시, 장소, 의제, 모임 목적의 개요 등
- 위원들의 이름과 직위, 임기, 서기와 의장의 이름과 주소
- 임명위원의 경우 임명 위원임을 적시해야 하며, 학부모위원에게 다음 선거에 대한 정보 제공
- 전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
-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
- 학교의 특수교육에 정책에 대한 정보
- 졸업생들의 진로상황

○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 다음 학년도의 각 학기 및 방학의 개시일과 종료일

⑤ 장학 감사

장학감사는 의무적으로 4년마다 1회씩 받게 된다. 장학감사자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주안에 감사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장학청, 교육청,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수준, 교육의 질, 자원관리의 효율성, 학생의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발달 정도 등이다. 보고서를 받으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요약서 사본을 모든 학생의 부모에게 보내야 하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보고서와 요약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사본료를 받을 수 있다.

3) 독일의 학교협의회⁵⁵⁾

(1) 개 요

독일의 경우 학교의 임무는 독일 연방정부의 헌법(기본법)과 주헌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학교법은 학교운영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임무, 「교사협의회」의 임무, 「학교협의회」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전체 교사협의회의 의장이며 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전체 교사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학교의 모든 업무관리와 책임을 진다. 학교장의 구체적인 임무는 학생의 입학·졸업·취학의무이행, 교사 임용배치 및 시간계획과 장학계획 편성 등이며, 외부에 대해 학교를 대표한다.

「교사협의회」(lehrerkonferenz)는 학교의 수업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중

55)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연구, 1995, pp.19-20.

요한 조치를 협의하고 결정하며, 서로의 지식과 관심을 교환하며 교사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교사협의회의 결정은 학교장과 교사가 따라야 한다. 협의회의 결정이 법규정에 위배되거나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되면 교육청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있기까지는 그 결정사항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학교협의회」(schulkonferenz)는 학교경영과정상의 주요 문제를 협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근본취지는 각 이해 집단의 고른 참여를 통해 학교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학교협의회」의 취지 및 구성

학교협의회는 학부모, 학교장, 교사, 학생들 간의 협력과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책임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공동조직체이다. 학교협의회는 최소한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교협의회 의장이 되고 학부모협의회 의장은 의장대리가 된다. 학교협의회에는 교사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다.

(단,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대표 없이 학부모대표 5명만이, 학부모협의회가 없으며 일반 학부모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3) 「학교협의회」의 기능

학교협의회는 학교경영, 교사·학부모·학생들의 협력,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개 그룹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협의회와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교육문제 특히 점수

를 부여하는 문제, 진급 등에 관한 제안권을 가지며, 특히 아래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하게 된다.

- 학교 기숙사 규칙의 제정
- 학교협의회에 관한 학교의 결정
- 학습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 학교의 규정과 행정규정의 일관성 있는 실행 결정
-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정학, 제적 등)
- 학교 시설·설비의 확보와 설치
- 시설 및 그 사용 청구
- 학교 이름의 부여
- 학생진급에 관한 문제
- 소풍, 도보여행, 수련회, 산업시찰, 박물관 견학 등과 같은 학교행사
- 동호인 활동(서클모임) 등

(4) 「학교협의회」의 운영

학교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타인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교사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공무원법과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특별한 대표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협의회는 출석위원 2/3의 동의로 실시 또는 계속적으로 참여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학교협의회는 적어도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적어도 위원 1/3의 제안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4) 일본의 PTA⁵⁶⁾

(1) 개요

일본에서 PTA(부모와 교사의 회)의 역사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PTA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의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학습활동이나 그밖의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PTA는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민간 정보 교육국(CIE)의 지도하에 「부모와 교사의 회-교육 민주화의 지침」의 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지침에는 많은 모임은 학교 설비나 기부 및 후원이 주요 업무이고, 진정으로 아동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적고, 학교의 교사에게서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주의를 받으며 의뢰를 받는 형식으로, 부모 측은 항상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부형회 등의 활동을 충분히 반성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가 되어 좀더 실제적으로 힘있는 근사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있던 회가 아니고, 교사와 부모가 평등한 입장에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2) 일본의 PTA와 학교

최근 대도시 주변의 신설교 가운데는 PTA가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PAT를 경원시하는 학교 측의 자세가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나 학교에나 PTA의 존재가치가 이미 없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말할 필요할 없이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말할 필요도 없

56) 공병호, 일본의 PTA활동과 지역의 교육력, 새교육 97년 2월호, pp.132-135.

이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나 가족, 교직원, 지역주민이 각각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어린이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PTA가 보여온 약점이나 학교측의 의견과 부모측의 의사가 때로는 대립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PTA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양측에게나 아동 학생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일본의 PTA는 재정면에서 학교후원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도 있으나 다시금 PTA 본래의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PTA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추구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를 부모나 교사가 함께 생각하여 서로 배울 필요가 있고 강연회나 학술회를 기획하여 회원 상호의 교양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국 PTA를 조직하여 운동하는 것이 의해 교육 요구의 실현을 꾀하는 것이 PTA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3) PTA의 현실 과제

일본의 PTA는 최근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PTA의 회원 자격의 문제이다. PTA는 본래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부모, 교직원의 회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PTA가 아동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므로 전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PTA의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임원 선출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PTA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는 부모들이 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원이 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어머니들의 현저한 사회 진출과 직업이 있는 부인의 증가가 이런 어려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PTA가 그 본래의 목적을 좀더 좋게 달성할 수 있게끔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5. 先行 研究의 考察

본 연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재원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학부모의 요구 분석”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실시에 대해 교사, 학부모 모두 매우 관심이 크며, 높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의 정수는 11~15명 정도가 적당하며,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교원의 비율로 교육부, 운영지침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 또는 심의 및 자문기구가 바람직하며, 회의 운영, 협의안건 선정, 결정사항 반영 등의 문제를 제대로 정한다면 학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역할과 문제 발생시 중재, 조정기능을 가진

광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감시, 평가하기 위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⁵⁷⁾

한상균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탐색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관해 갖는 권한은 사안에 따라 심의, 의결, 자문의 기능을 가져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의 예산, 결산, 교과선택, 특별활동의 프로그램 설정, 규칙의 제정,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및 청원 등에 관해 의견의 기능을 가져야 되며, 학교운영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 분담을 하여 각자의 역할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학교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육성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급식후원회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자문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될 경우 기존의 육성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정일섭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조사”에서 운영위원회의 준비 단계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기대 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켜 구성원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운영위원회를 교육 현장에 바람직하게 접목시키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연구한 결과 학부모들의 학년초 육성회나 어머니총회에 일시적 참여가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며, 현재 학교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는 것으로 교사, 학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규제에 묶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

57)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67-68.

58) 한상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 탐색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62-63.

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인식이지만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육성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위원회의 기능중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에 대한 의결기능과 기부금 징수 및 관리의 의결 기능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⁵⁹⁾

이동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감을 제외하는 항목에서 학부모들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하는데 비해서 교사집단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도 교사 집단은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학부모 집단은 2년의 기간을 부정하는 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심의기관이지만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학교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능이 없는 자치기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대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지 학교의 기구로써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임병채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조사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동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들에 대

59) 정일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78-79.

60) 이동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pp.49-52.

한 적절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며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직까지 학교운영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지도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각각 분석한 몇편의 연구결과에 의하며 시행 1년을 맞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학부모, 교사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교육개혁의 핵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61) 임병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조사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42-45.

Ⅲ. 研究의 方法 및 節次

1. 研究의 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경합학교 5개교, 일반학교 5개교, 준특학교 5개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6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응답율은 <표 2>과 같다.

<표 2> 설문지 배부와 유효 응답율

(구성비율 : %)

구 분	교 사	학 부 모	계
배 부 된 수	265	304	569
회 수 율 (%)	88.33	86.86	87.60

설문지 배부 및 유효 응답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300부, 학부모에게 350부를 배부하여 교사는 265부를 회수하여 88.33%의 학부모는 304부 회수하여 86.86%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여 569부를 회수한 결과 유효응답율은 87.60%이다.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교사의 변인별 분포는 <표 3>와 같다.

<표 3> 교사의 변인별 분포

변 인	구 분	인 원	백 분 율(%)
학 교 급 별	경합학교	107	40.38
	일반학교	73	27.55
	준특학교	85	32.08
성 별	남	60	22.64
	여	205	77.36
직 위	교 사	200	75.47
	주임교사	65	24.53
연 령	20 대	26	9.81
	30 대	82	30.94
	40 대	97	36.60
	50 대	48	18.11
	60 대	12	4.53
학부모의 교 육 적 관 심 도	매우 높다	21	7.92
	높은 편이다	97	36.60
	보통이다	75	28.30
	낮은 편이다	57	21.51
	매우 낮은 편이다	15	5.66
전 체		265	

2) 학부모

학부모의 변인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학부모의 변인별 분포

변 인	구 분	인 원	백 분 율(%)
성 별	남	77	25.33
	여	227	74.67
연 령	20 대	3	0.99
	30 대	177	58.22
	40 대	120	39.47
	50 대	4	1.32
학 력	국 졸	2	0.66
	중 졸	21	6.91
	고 졸	148	48.68
	대졸이상	133	43.75
직 업	전문기술직	85	27.96
	사 무 직	92	30.26
	서비스직	30	9.87
	판 매 직	34	11.18
	생 산 직	31	10.20
	농림수산직	1	0.33
	기 타	31	10.20
학교 급별	경 합	90	29.60
	일 반	103	33.88
	준 특	111	36.51

2. 研究의 道具 및 內容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과 내용을 같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는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교사, 학부모 설문지의 문항별 구성 및 내용

영역	설문지의 내용	문항번호
조직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반응	1
	위원의 수 적정성 여부	2
	위원의 구성 비율	3
	교감 배제	4
	위원회가 육성회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5
	선출시기	6
	위원의 임기	7
기능	학교 예·결산 심의	8
	방과후 특별 활동 심의	10
	학교 발전 기금 모금	11
	민주적 운영 정도	12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의결기능에 대한 인식	13
	학교 운영 위원회의 효과	14
운영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오는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9
	회기	15
	회의 일수	16
	위원장의 교원 배제	17
	안전 발의 사항	18
	학교운영위원회의 감시, 평가 장치	19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관	20
	지각 요인 중요도	21

3. 資料의 處理

-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 2) 각 문항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χ^2 (Chi-Square)검증과 T-test, F 검증을 하였다.
- 3) 결과에 따른 유의도 분포는 $p < 0.05$, 0.01, 0.001 수준에서 실시 하였다.

IV. 結果分析과 論議

1. 研究 結果

연구의 결과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의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표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

1)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표 6>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하위영역	학부모와 교 사	N	M	SD	t	df	P
설치반응	학부모	315	4.02	0.90	0.1043	578.0	0.9170
	교 사	265	4.01	0.87			
위 원 수	학부모	314	3.68	0.96	-1.8709	577.0	0.0619
	교 사	265	3.82	0.82			
위원의 구성비율	학부모	312	3.77	0.93	7.0376	574.0	0.0000
	교 사	264	3.19	1.05			
교감제외	학부모	311	3.72	1.27	3.4429	574.0	0.0006
	교 사	265	3.37	1.13			
위원회가 육성회 변질가능	학부모	315	4.13	0.95	2.78	578.0	0.0056
	교 사	265	3.90	1.03			
선출시기	학부모	311	3.71	1.0	3.9643	572.0	0.0001
	교 사	263	3.39	0.94			
위원임기	학부모	307	3.66	1.15	0.0043	567.0	0.9966
	교 사	262	3.66	0.87			
전 체	학부모	318	3.82	0.59	4.26	581.0	0.0000
	교 사	265	3.62	0.51			

<표 6>에 의하면 조직에 따른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유의있게 나타났다. 각하위변인들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비율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0.001$)이 학부모 평균은 3.77, 교사평균은 3.19이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비율은 교원 비율이 최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서 학부모 평균이 교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교감을 제외하는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하는데 비해서 교사 집단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부모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반응과 위원의 위원수, 위원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조직에 의하면, 특히 위원의 구성 비율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은 교원 비율이 최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서 학부모 집단은 긍정적이나, 교사 집단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의 숫자에 교사 위원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교 급별	N	M	SD	F	P
설치반응	경합	88	4.12	0.92	1.26	0.2840
	일반	106	4.00	0.83		
	준특	116	3.93	0.96		
위원수	경합	89	3.66	0.93	0.47	0.6262
	일반	106	3.75	0.99		
	준특	114	3.63	0.98		
위원의 구성비율	경합	88	3.70	1.00	5.48	0.0046
	일반	105	4.00	0.83		
	준특	114	3.60	0.95		
교감제외	경합	86	3.55	1.35	2.35	0.0967
	일반	104	3.93	1.10		
	준특	116	3.701	1.28		
위원회가 육성회 변질가능	경합	88	4.24	0.84	1.02	0.3621
	일반	105	4.08	0.96		
	준특	117	4.06	1.03		
선출시기	경합	86	3.53	1.09	5.38	0.0051
	일반	105	3.97	0.79		
	준특	115	3.64	1.04		
위원임기	경합	88	3.61	1.14	2.29	0.1027
	일반	103	3.84	1.02		
	준특	111	3.51	1.27		
전체	경합	90	3.76	0.56	4.79	0.0089
	일반	106	3.96	0.56		
	준특	117	3.75	0.618		

<표 7>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지역별 학부모 차이는 전체적으로 F의 값이 4.79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4.60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설치 반응의 경우에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1.2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 졌다.

위원회 구성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얻어진 F의 값 5.48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은 4.60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제외와 선출시기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교급별	N	M	SD	F	P
설치반응	1	107	4.02	0.87	0.43	0.6494
	2	73	4.08	0.76		
	3	84	4.00	0.97		
위원수	1	107	3.88	0.87	0.74	0.4771
	2	73	3.85	0.72		
	3	84	3.74	0.82		
위원의 구성비율	1	107	3.22	1.22	2.04	0.1322
	2	72	3.35	0.92		
	3	84	3.01	0.91		
교감제외	1	107	3.33	1.26	4.56	0.0113
	2	73	3.69	0.96		
	3	84	3.12	1.05		
위원회가 육성회 별질가능	1	107	3.87	1.03	0.11	0.8932
	2	73	3.90	0.95		
	3	84	3.94	1.10		
선출시기	1	106	3.35	1.03	1.91	0.1499
	2	73	3.58	0.74		
	3	83	3.30	0.95		
위원임기	1	104	3.75	0.86	1.47	0.2309
	2	73	3.70	0.70		
	3	84	3.54	1.01		
전체	1	107	3.63	0.54	3.56	0.0297
	2	73	3.74	0.43		
	3	84	3.52	0.53		

<표 8>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얻어진 F의 값은 3.5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교감

제외는 일반학교에서는 준특학교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특히 F의 값이 4.5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2.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

<표 9>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부모와 교사	N	M	SD	t	df	P
학교 예결산 심의	학부모	310	4.01	0.93	5.9494	569.0	0.0000
	교사	261	3.52	1.03			
방과후 특별활동 심의	학부모	314	3.83	1.01	5.4596	576.0	0.0000
	교사	264	3.40	0.84			
학교 발전기금 모금	학부모	311	3.60	1.32	5.3182	573.0	0.0000
	교사	264	3.03	1.22			
민주적 운영 정도	학부모	312	3.78	0.96	4.2865	576.0	0.0000
	교사	266	3.44	0.94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의결	학부모	308	3.79	0.96	8.0615	572.0	0.0000
	교사	266	3.10	1.07			
학교 운영위원회 효과	학부모	303	3.76	0.91	4.6009	565.0	0.0000
	교사	264	3.41	1.90			
전체	학부모	318	3.77	0.61	9.2877	583.0	0.0000
	교사	267	3.31	0.65			

<표 9>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학교 예결산 심의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유의있게 나타났다. ($p<0.001$) 학부모는 평균 4.01로 높게 반응한 반면 교사집단은 3.52로 나

타났다. 방과후 특별 활동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평균 3.83으로 높게 반응 했으며 교사 집단도 3.40으로 나타났다.

학교 발전 기금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의의 있게 나타났다.($p<0.01$) 학부모집단은 평균 3.60으로 긍정적인 반면 교사집단은 평균 3.03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의의있게 나타났다. ($p<0.001$) 학부모 집단은 평균 3.76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교사 집단은 학교 운영 위원회의 효과에 대하여 평균 3.41로 학부모 집단보다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교급별	N	M	SD	F	P
학교 예·결산 심의	경합	86	4.07	0.91	0.23	0.7918
	일반	104	3.98	0.92		
	준특	115	4.00	0.96		
방과후 특별 활동심의	경합	88	3.76	1.07	0.80	0.4483
	일반	105	3.92	0.92		
	준특	115	3.78	1.06		
학교 발전기금 모금	경합	89	3.63	1.29	2.11	0.1233
	일반	103	3.76	1.19		
	준특	114	3.40	1.45		
민주적 운영 정도	경합	89	3.67	0.91	3.38	0.0353
	일반	104	3.97	0.95		
	준특	114	3.68	0.96		
학교장 및 교사 초빙 제의결	경합	88	3.60	1.05	2.53	0.0811
	일반	103	3.91	0.95		
	준특	112	3.81	0.91		
학교 운영위원회 의 효과	경합	85	3.66	0.97	1.84	0.1610
	일반	101	3.90	0.84		
	준특	112	3.72	0.91		
전체	경합	90	3.74	0.63	1.19	0.3062
	일반	106	3.90	0.57		
	준특	117	3.74	0.63		

<표 10>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얻어진 F의 값은 1.1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정도는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3.3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의 집단은 평균 3.97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의결에 대해 학부모 집단은 경합이나 일반 준특 어느지역에서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예산·학칙제정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 및 교사 초빙을 위한 추천 위원회의 구성·운영하는 의결권을 가져 교육 자치의 핵심 주체가 되게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교급별	N	M	SD	F	P
학교 예·결산 심의	경합	104	3.76	1.03	10.12	0.0001
	일반	72	3.67	0.88		
	준특	84	3.12	1.06		
방과후 특별 활동심의	경합	106	3.58	0.88	5.84	0.0033
	일반	73	3.42	0.64		
	준특	84	3.17	0.88		
학교 발전기금 모금	경합	106	2.99	1.25	0.63	0.5348
	일반	72	3.17	1.10		
	준특	85	2.96	1.28		
민주적 운영 정도	경합	107	3.31	1.04	6.30	0.0021
	일반	73	3.77	0.66		
	준특	85	3.33	0.96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의결	경합	107	3.00	1.17	1.83	0.1618
	일반	73	3.30	1.01		
	준특	85	3.06	0.98		
학교 운영위원회 효과	경합	106	3.40	0.93	2.87	0.0584
	일반	73	3.60	0.74		
	준특	84	3.26	0.96		
전체	경합	107	3.32	0.67	3.22	0.0416
	일반	74	3.50	0.54		
	준특	85	3.15	0.67		

<표 11>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얻어진 F의 값은 3.2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학교 발전기금 모금과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의결에 대하여는 경합학교, 일반, 준특학교 교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학교 발전 기금 모금은 준특학교에서는 평균 2.96으로 매우 낮으며 준특학교는 지역의 특성상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차이

<표 12>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부모와 교 사	N	M	SD	t	df	p
학부모의 간섭에서오는 저해요인	학부모 교 사	314 265	3.85 3.66	1.03 0.96	2.3604	577.0	0.0186
회기	학부모 교 사	306 265	3.90 3.62	0.89 0.90	3.7728	569.0	0.0002
회의일수	학부모 교 사	301 264	3.50 3.35	0.93 0.89	1.9875	563.0	0.0474
위원장의 교원배제	학부모 교 사	310 264	3.48 3.22	1.31 1.21	2.4500	572.0	0.0146
안전 발의 사항	학부모 교 사	308 263	2.82 2.70	1.26 1.07	1.31	569.0	0.1923
학교 운영 위원회의 감시, 평가장치	학부모 교 사	309 260	4.02 3.74	1.08 1.04	3.1858	567.0	0.0015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관	학부모 교 사	308 2693	3.42 3.12	1.23 1.17	3.0100	569.0	0.0027
전체	학부모 교 사	318 267	3.57 3.34	0.60 0.50	4.8920	583.0	0.0000

<표 12>에 의하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 에서는 전체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유의있게 나타났다. ($p<0.001$)

이상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위원장의 교원 제외도 학부모와 교사 집단은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p<0.05$) 학부모 집단은 3.48로 긍정적인 반면, 교사집단은 3.22로 학부모집단보다 낮은 반응을 나타냈다. 안전 발의 사항을 회의전에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p>0.05$)

학교운영 위원회의 위상으로 심의 기능만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집단간에 유의있게 나타났다. ($p < 0.01$) 학부모 집단은 평균 3.42로 긍정적인 반면 교사집단은 3.12로 좀 낮은 편이다.

<표 13>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 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

하위영역	학교급별	N	M	SD	F	P
학부모의 간섭에서 오는 저해요인	경합	88	3.77	0.92	0.29	0.7453
	일반	105	3.88	0.99		
	준특	116	3.87	1.17		
회기	경합	86	3.77	1.01	2.07	0.1274
	일반	102	4.03	0.861		
	준특	113	3.90	0.78		
회의일수	경합	85	3.54	0.78	1.75	0.1760
	일반	101	3.62	1.0		
	준특	110	3.39	0.94		
위원장의 교원 배제	경합	88	3.44	1.36	0.57	0.5679
	일반	102	3.58	1.28		
	준특	115	3.39	1.33		
안전 발의 사항	경합	89	2.84	1.25	0.09	0.9147
	일반	103	2.86	1.32		
	준특	111	2.79	1.23		
학교 운영위원회의 감시·평가 장치	경합	88	4.26	0.94	3.32	0.0373
	일반	102	3.90	1.09		
	준특	114	3.92	1.15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관	경합	86	3.22	1.24	2.94	0.0543
	일반	104	3.64	1.21		
	준특	114	3.40	1.20		
전체	경합	90	3.52	0.57	1.19	0.3062
	일반	106	3.64	0.63		
	준특	117	3.54	0.61		

<표 13>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 차이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의 유의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특히 안전 발의 사항을 회

의 전에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학교급별로 평균이 2.84, 2.86, 2.79로 안전 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운영 위원회의 감시·평가 장치가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3.32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 지각차이

하위영역	학교급별	N	M	SD	F	P
학부모의 간섭에서오는 저해요인	경합	107	3.67	0.94	1.44	0.2390
	일반	73	3.78	0.90		
	준특	84	3.52	1.02		
회기	경합	106	3.57	0.98	0.94	0.3930
	일반	73	3.74	0.75		
	준특	85	3.58	0.92		
회의 일수	경합	106	3.35	0.87	2.88	0.0579
	일반	72	3.54	0.79		
	준특	85	3.20	0.99		
위원장의 교원배제	경합	105	3.10	1.21	1.17	0.3118
	일반	73	3.25	1.18		
	준특	85	3.37	1.269		
안전 발의 사항	경합	106	2.43	1.12	5.88	0.0032
	일반	73	2.93	0.96		
	준특	3.81	2.82	1.05		
학교 운영위원회의 감시 평가장치	경합	103	3.67	1.11	0.43	0.6542
	일반	73	3.81	0.86		
	준특	83	3.77	1.11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관	경합	104	3.18	1.24	1.09	0.3367
	일반	73	3.21	0.96		
	준특	85	2.97	1.25		
전체	경합	107	3.28	0.48	3.22	0.0416
	일반	74	3.46	0.52		
	준특	85	3.32	0.49		

<표14>에 의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얻어진 F의 값은 3.22로 이는 P=0.05수준에서 요구되는 F의 값 2.99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안전 발의 사항을 회의 전에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반학교 교사와 준특학교 교사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합학교교사평균은 2.43으로 안전 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반면, 일반 학교 교사는 평균 2.93으로 경합학교 교사보다 안전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홍보부족과 참여 의욕 저조로 한 준비가 소홀하기 때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운영 위원회의 감시 및 평가 장치로 학교급별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학교 운영 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순위

<표 15> 교사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따른 지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급별	조직	기능	운영	계
경 합	9	62	26	97
일 반	2	50	19	71
준 특	9	51	23	83
계	20	163	68	251
의 의 도	$\chi^2 = 3.952$	df = 4	P > 0.05	N = 251

<표 16> 학부모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따른 지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급별	조직	기능	운영	계
경 합	6	63	19	88
일 반	12	64	25	101
준 특	12	62	37	111
계	30	189	81	300
의 의 도	$\chi^2 = 6.045$	df = 4	P > 0.05	N = 300

<표 15>과 ,<표 16>는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순위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중 교사와 학부모 모두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조직보다 운영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도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論 議

학교 운영 위원회가 조직된 95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되어 실시 초기 단계로 실제 운영에서 발생한 것을 토대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중심으로 조직, 기능, 운영으로 분류하여 학부모와 교사, 학교급별의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살펴 보았다.

위에 제시된 연구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명시된 조직에 의하면, 특히 위원의

구성 비율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은 교원 비율이 최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서 학부모 집단은 긍정적이나, 교사 집단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의 숫자에 교사 위원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 성격을 띄고 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원 위원의 40%는 재고 되어야 할 비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교감을 제외하는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하는데 비해서 교사 집단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활동의 실제 면에서 교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감을 제외 시킨다는 것은 학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 운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교사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학교 운영 위원회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즉, 학교교육의 간섭, 파벌 조장-학교장 초빙제, 교사 초빙제, 교원 위원간 학부모 위원의 갈등 사항 등이 대두 될 것이다.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학교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는 설치반응, 위원수, 교감제외, 위원회가 육성회 변질 가능성, 위원임기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준특이 경합과 일반보다 평균이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준특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어떻게 참여 하는지를 모르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년초 육성회나 어머니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단순적인 참여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경영에 대하여는 평균이 4.06이상으로 매우 그렇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육성회로 변질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자치의 주체인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운영 위원회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학교 운영 감시 등의 역할은 소홀히 한채 후원금을 강제 할당해 걷는 육성회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의 임기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운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우 학년도마다 학부모의 임원진이 조직되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넷째,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중 교감제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위원회가 육성회 변질 기능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주체는 교원이므로 위원회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육성회 변질 가능성은 학교 경영은 교육전문직인 학교장이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육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섯째,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방과후 특별 활동에서 학부모나 교사의 지각차이가 의의 있게 나타났다. ($P<0.001$) 학부모의 평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 운영할 경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시설과 질 높은 방과후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발전기금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학부모 집단은 평균 3.60으로 긍정적이며 교사집단은 평균 3.03으로 조금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이는 학교의 자율적 경영에 있어서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지역 사회 학교 중심의 재정관리가 자율적 학교 운영에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학부모집단은 평균 3.76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교사 집단은 평균 3.41로 학부모 집단 보다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학교 교육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학교 경영에 참여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관만 있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P<0.01$) 학부모 집단은 3.42로 나타났으며 반면 교사 집단은 3.12로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범운영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빠져 있으나, 운영 지원비의 징수와 관리, 방과후 특별 활동 프로그램 실시 여부와 비용, 예결산등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과 상호협력해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자치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안전 발의 사항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의 집단 모두 평균

2.82, 2.70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준비기간의 촉박과 홍보 부족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 학교 운영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능 중 학부모와 교사 집단 모두 기능면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운영 위원회가 유명 무실하게 존재하는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사, 학부모의 참여 기구로써, 학부모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교사는 학교운영 위원회가 학교장의 전유물이 아닌 교사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운영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심의기관이지만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학교 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 위원회가 의결 기능이 없는 자치 기구도 그 역할에 대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결과이다.

V. 要約, 結論 및 提言

1. 要約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사와 학부모간의 지각차이가 어떠한지를 밝혀보고, 학교급별에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히는데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힌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힌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를 밝힌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기능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순위를 밝힌다.

1)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의의 있게 나타났다.($p<0.001$) 위원의 구성 비율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과는 교사는 학부모 수를 같게 하자는데 인식을 하고 학부모는 구성 비율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는 위원회가 자주성에 침해 받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학부모들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하는데 비하여 교사 집단은 교감을 제외하는 것을 학부모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2) 학교 운영 위원회의 설치, 학교 운영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 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학교 운영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학교 급별 학부모 지각차이는 설치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위원회 구성비율, 선출시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1$)

4) 학교 운영 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는 설치반응, 위원수, 위원의 구성비율, 육성회 변질가능성, 선출 시기, 위원임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감제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P<0.05$)

5)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P<0.001$)

6)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교 급별 학부모의 지각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P<0.05$) 민주적 운영 정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의 기능중,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에 대한 의결기능과 기부금 징수 및 관리의 의결 기능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7) 학교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학교 발전 기금과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는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

8)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회기 감시, 평가 장치, 심의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9)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교 급별 학부모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안전발의 사항만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발의 사항은 아직 교사에게 홍보부족과 참여 의욕 저조로 인한 것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1) 학교 운영 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중 학부모, 교사 모두 기능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운영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바람직 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장과 상호협력하여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에 개혁을 가져와야겠다는 바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운영 위원회가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학교 공동체라는 공동책임 의식이 형성되는 등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 운영 위원회가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든지 간에 그 구성 자체가 갖는 큰 의의는 학교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의 주체자인 교원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협력 함으로써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 이다.

2. 結 論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매우 긍정적이며 학교급별 학부모의 지각차이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나 학부모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지시적으로 구성되어 학교와 학부모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과거 육성회처럼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학교급별 교사의 지각차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즉 학교교육의 간섭, 파벌 조장-학교장 초빙제, 교사 초빙제 교원 위원간 학부모 위원의 갈등 사항 등이 대두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과외 완화와 과중한 과외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 차이는 매우 긍정적이며 학교급별 학부모의 생각은 아직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 교사의 지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놓고 학교장과 위원회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협의체가 없고, 특히 학교밖의 인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할 경우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중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보다 운영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학교 운영 위원회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직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아직까지 학교 운영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었다.

3. 提 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운영 위원회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운영 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지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학교 운영 위원회에 참여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 운영 위원회에 대한 연구가 지방학교, 사립학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기대 된다.

參考文獻

- 강 사 민,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교육부 해외교육정보, 1996. 3. 1.).
- 김 보 현 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 1982).
- 김 신 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연구회 제3권 제3호(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12).
- 김 신 일 외, 시민의 교육학(서울 : 한길사, 1995).
-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서울 : 성원사, 1988).
- 김종철·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4).
- 김종철·김신복·이종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행·재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85. 12.
- 공 병 호, 일본의 PTA활동과 지역의 교육력, 새교육 97년 2월호.
-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3(서울:교육개혁심의회, 1986. 12).
- _____, 교육개혁종합구상 (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7).
- _____,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자료, 1994).
- 교 육 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교육부 지방 교육지원, 1996.7).
- 남 정 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서울과학사, 1991).
- 노 재 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노 종 회, 교육행정(서울 : 문음사, 1992).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 5.
- 문 락 진, 학교·학급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 서울상경초교, 학교급식후원회 규약.
- 서울중평초교, 「녹색 어머니회 운영 계획서」
- 서 정 화 외, 교육행정제도 개선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0).
- 손 재 식, 현대지방 행정론(서울 : 박영사, 1983).
- 송 인 호,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교육부 해외 교육정보, 1996.2.1).
- 안 세 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교육정책과정 분석연구'(서울:전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3).
- 어 대 수, 학교 육성회 운영에 관한 연구(부산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
원석사학위논문, 1991).
- 이 동 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
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이 영 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교육부, 교육월보, 1995. 3).
- 임 병 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초등학교 교원들의 의식조사 연
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 정 일, 교육재정학(서울 : 세영사, 1993).
- _____ 외, 한국의 교육정책(서울 : 교육과학사, 1991).
- 유 현 숙,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역할, 새교육. 1995. 11.

정 일 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망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인식조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지위에 관한 報告' 教育小學法(동경:學陽서방1986).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망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조 병 효,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서울 : 교육과학사, 1988),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 : 양서원, 1996.).

조 성 일,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서울 : 재동문화사, 1995).

조 창 신, 학교 육성회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교육부 지방 교육 지원과, 을지문화사, 1996.7.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연구, 1995.

한 상 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 탐색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Robert 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兼子仁 외, 教育行政と 教育法の理論 東京:東京大學出版, 1979.

<부록>

학교운영위원회 실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본 조사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95.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오며, 응답하신 귀하의 의견은 모두 통계처리되어 본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성의있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97. 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장 길 자 드림

※ 다음은 선생님(학부모)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A. 기초조사

1. 교사용 (선생님과 관련있는 사항에 “V”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1	2	3	4	5
1	학교급별	경합 ()	일반 ()	준특 ()		
2	성 별	남 ()	여 ()			
3	직 위	교사 ()	주임교사 ()			
4	연 령 별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5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도	매우높다 ()	높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낮은 편이다 ()	매우낮다 ()

2. 학부모용 (학부모님께 관련있는 사항에 “V”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1	2	3	4	5	6	7
1	성 별	남 ()	여 ()					
2	연 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			
3	학 력	국 졸 ()	중 졸 ()	고 졸 ()	대졸이상 ()			
4	가장의 직업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생산직 ()	농림수산업 ()	기 타 ()

※ 다음 문항을 보시고 해당되는 의견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예 :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바람직하다.

(응답) 매우 그렇다이면 (5)번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V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바람직하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7~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적당하다					
3.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교원 30~40%, 학부모 40~50% 지역위원은 10~30%의 비율 이 알맞다.					
4. 교감도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에 찬성한다.					
5. 위원회의 구성이 학교장의 측근 인사로 조 직이 된다면 후원금만 걷는 육성회로 변질 될 수 있다.					
6. 위원들의 선출시기는 회기 개시일 10일 전 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적당하다.					
8.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예산 결산 심의 가 효과적이다.					
9.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위원들의 참여와 열의가 부족해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해 질 수 도 있다.					
10. 방과후 특별활동 심의가 효과를 거둘 것 이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그저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1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개인의 기부금은 거둘 수 없으나 자발적 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접수 창고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에 찬성이다.					
12.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된다면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1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중 교장 및 교사 초빙 기능에 관하여 바람직하다.					
14.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15. 회기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가 알맞다.					
16. 회의 일수는 30일이 적당하다.					
17. 교육부 지침에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접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안전 발의 사항을 회의 전에 교사 학부모 모두가 잘 알고 있다.					
19. 학교운영위원회를 감시, 평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20.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심의기능(의결권이 없음)만을 가져야 한다.					
21.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에 V표해 주십시오.	① 조직 ()	② 운영 ()	③ 기능 ()		

ABSTRACT

A Consideration for Perception Both of Parents and Teachers About School Steering Committee

Chang , Gil - Ja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were ;

Firstly, the perception differ for organization of steering committee were so positive viewing both of parents and teachers, and perception differ about school grade of parents and teachers were be shown similary result.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ook some worrie to operating as a conventionality the reason of it occured not a naturally need by parents of school but structured by the derection of government.

Secondly, there's no similarity differ against the function of steering committe both of teachers and parents, the differ of perception against school degree was be shown as positively. In spite of expectation of several problems, such as interference in educational curriculum, make a faction, principal invitation, school master invitation and quarrel among the committee, From the practice of school steering committee,

it still expected it's function to calm down of overheated private lesson fever and its expensis by the activity of steering committee.

Thirdly, the perception differ for steering committee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were so positive while parents consider for school grade were negative response. The weak point of this system were it haven't any arbitration orgainze when occured trouble between committee and principal, particulary in case of an exterior member hold committee's hegemony, it may possible to take a confused situation.

Fourthly, thought of collectively of study, the teachers perception could explained positive, the function of steering committee also could explained positive eventhouth it's function are not practical experienced. The effectiveness of committee were not yet direct effect to school operating but perception about it was positive in generally.